

의안번호	제 127 호
보 고 년 월 일	2011. 1. 19. (제 4 회)

보
고
사
항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

제 출 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간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1. 1. 19.

1. 보고주문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 배경

- 그 동안 국가정보화에 대한 지속 투자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 위주의 평가 체계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저하 등 문제점 잔존
 - ※ 전자정부지수(1위), 온라인 참여지수(1위) ↔ 글로벌 SW기업(삼성SDS 56위, 안철수연구소 361위)
- 국가정보화와 IT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수발주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

나. 국가정보화시장 현황

- (시장규모) 국내 정보화 시장은 17.4조원('09년) 규모이며, 그룹 계열사간 독점 수주시장을 제외한 실질적 경쟁가능 시장은 11.6조원
 -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공공시장은 약 6.2조원 규모로 경쟁가능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

- (시장구조) 공공시장은 대기업 65%, 중소기업 35% 차지('09년)
 - 중소기업이 수주한 사업건수는 대기업의 5.1배이지만, 수주건당 사업비 규모는 대기업의 10.5% 수준(대기업 33.8억↔중소기업 3.6억)
 - 최근 대기업 참여하한제 확대('09.4)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09년 35.1%→'10.10월 40.4%)
- (상용제품 도입현황) 정보시스템 구축시 국산 제품 비중은 보안장비(83.1%), SW(39.4%), 네트워크(14.8%), HW(13.2%) 順



다. 문제점

- 기술위주의 평가 미흡으로 IT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기술 對 가격=8:2)
 - ※ 평균 낙찰률 : 86.6%, 가격에 의한 종합점수 역전비율 : 13.8%(20억 이상 사업)
- 공공부문에서의 과도한 고성능 제품 요구, 제안요청서에 특정규격 제시 등으로 예산낭비 및 국산장비의 공공시장 진입제한
 - 국내기업간 경쟁하는 SW개발사업은 중소기업 가점이 있는 반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상용SW도입사업은 중소기업 가점 부재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불명확 및 잦은 과업변경, 긴급입찰 공고 남용 등 후진적 사업발주·관리로 수주기업의 경쟁력 내재화 곤란
 - ※ 중앙행정기관 : 일반공고(40일) 비율 5%, 법정최소일(10일)로 긴급공고 비율 42%
-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형식적 하도급 승인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에 대한 대처 미흡
 - ※ 사업제안 시 하도급 금액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며, 원청업체 선정 후 서면 계약

라. 주요내용

- (기술중심 평가 강화)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기술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평가 비중 상향조정(8:2→9:1)
 - 조달심사시 대형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3일전)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평가위원 Pool 구축 및 수요기관 제공
-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 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 공개(5일) 의무화
 - 상용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비교분석시험(BMT : Benchmark Test) 의무화 추진
 - ※ 업계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SW분야 등으로 확대
 - 상용제품 기술평가지, 중소기업 개발 제품에 대해 가점 부여
 -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상용SW,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 명문화 추진
- (사업관리 체계 선진화) 제안요청서(RFP)의 과업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재난,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 등 긴급공고 요건을 강화하되 일반 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 최소 공고기간 : 40억원 이상 30일, 10억원 이상 25일, 10억원 미만 20일
 - 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개정
 - ※ 기존 낙찰차액 활용대상인 감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 SW개발자의 근무환경(가칭 4D 업종) 개선 등을 위해 일정 보안요건을 갖춘 경우 업체의 개발센터에서 사업수행 허용
 - ※ 국가정보화사업 작업장 : 발주기관(55%), 임대사무실(13%), 업체개발센터(32%)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 비율 제안서 명시 의무화 및 하도급 승인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대기업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문화운동 전개 등 의식변화 유도

- (제도개선 이행 강화) 현행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보화 부문에 수발주제도 준수여부 반영
 - 발주제도 개선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범정부 EA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계 관리

【별 지】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

2011. 1.

행정안전부 · 지식경제부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현황 및 문제점	2
III .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9
IV . 향후 추진계획	18
<붙임1> 국가정보화사업 발주관리 실태조사 결과	19

I. 추진배경

- 그 동안 지속적인 국가정보화 투자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 온라인 민원, 전자조달, 국세·관세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신청·처리 비용 절감 및 기간 대폭 단축
 - '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등 우리나라 정보화 성과를 세계가 인정

<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 평가 >

전자정부발전지수(UN)	온라인 참여지수(UN)	ICT 발전지수(ITU)	네트워크준비지수(WEF)
1위	1위	3위	15위

- 이러한 국가정보화 성과가 국내 IT기업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나, 불합리한 관행 등 문제점 잔존
 - 국가정보화 사업시 높은 외산제품(하드웨어, 상용SW, 네트워크장비) 의존도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부족
 - ※ 글로벌 100대 패키지SW 기업은 전무한 실정(안철수 연구소 361위, 핸디소프트 357위)
 - 국가정보화사업 발주과정에서 기술보다는 가격위주의 평가체제로 인해 국내 IT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
 - ※ 글로벌 100대 IT서비스 기업은 3개(삼성SDS 56위, LG CNS 68위, SK C&C 99위)
- 국가정보화와 IT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수발주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

- 대통령님께서 8.15광복 65주년 경축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필요성 제시
 - 행안부-지경부 공동 T/F팀('10.9)을 구성하여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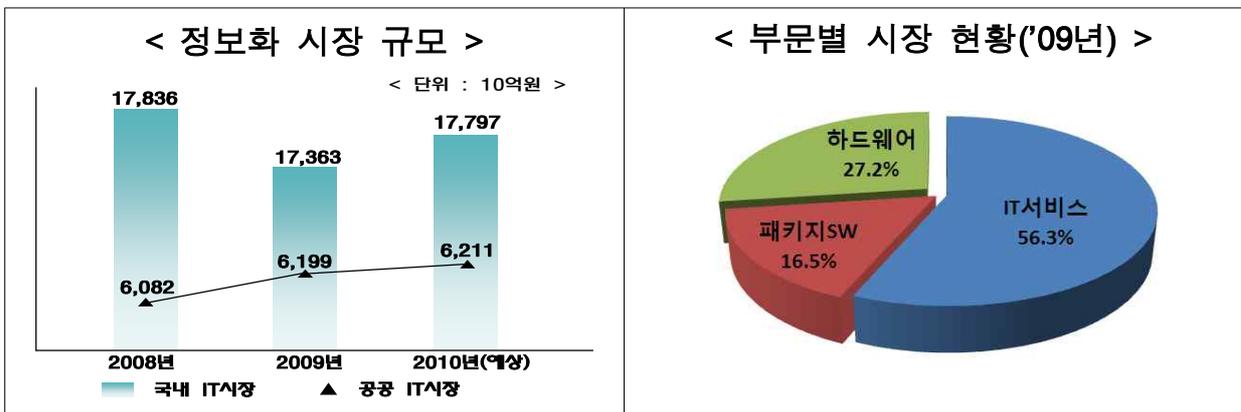
II.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정보화 시장현황

① 국가정보화 시장규모

○ 우리나라 정보화 시장은 17.4조원('09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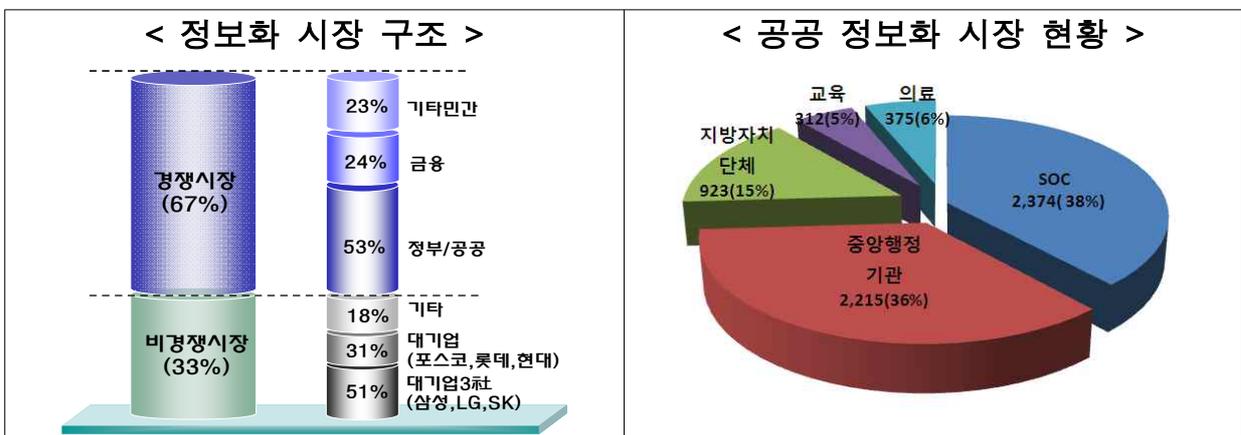
- IT서비스(9.8조원), HW(4.7조원), 패키지SW(2.9조원)



※ 자료 : KRG(2010년 국내 IT시장 전망)

○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공공시장은 약 6조원 규모로 경쟁가능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

- 공공시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은 36%, 지자체 15%, 공공기관 49% 차지



※ 자료 : KRG(2010년 국내 IT시장 전망)

② 국가정보화 시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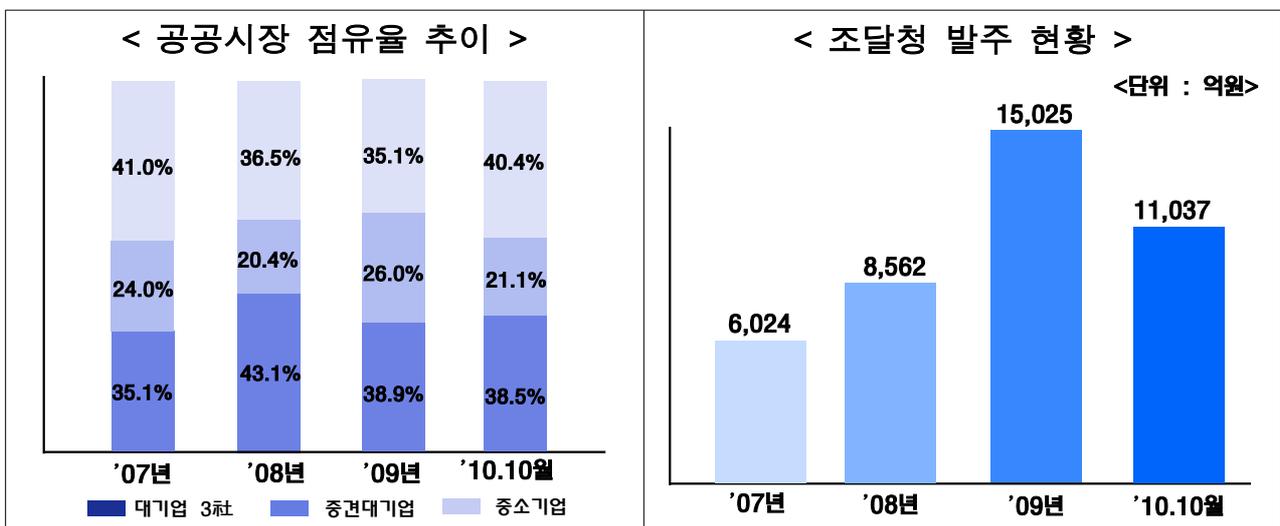
- 공공시장은 대기업 65%, 중소기업 35% 차지('09년 조달 계약기준)
 - 중소기업이 수주한 사업건수는 대기업의 5.1배이지만, 수주건당 사업비 규모는 대기업의 10.5% 수준(대기업 33.8억↔중소기업 3.6억)

< '09년 정보화사업 조달계약 체결 현황(조달청) >

구 분	대기업 3사 (삼성, LG, SK)	중견대기업 (41개사)	중소기업 (651개사)	합 계
수주건수(건)	119(6.7%)	170(9.6%)	1,483(83.7%)	1,772
수주금액(억원)	5,845(38.9%)	3,913(26.0%)	5,267(35.1%)	15,025

※ 대기업 : 매출액 300억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최근 대기업입찰참여하한제 확대('09.4), SW분리발주 의무화('09.6)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중소기업 시장은 대기업 3사(삼성SDS, LG CNS, SK C&C) 보다 중견 대기업 시장을 잠식
- “수요기관 직접 발주”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을 통한 발주”는 지속적으로 확대
 - 조달발주는 '07년 6,024억 → '08년 8,562억 → '09년 15,025억 증가



※ 자료 : '07~'10년 조달청 발주사업 기준

③ HW 및 상용SW 도입 현황(행정·공공기관)

- 정보시스템 구축시 국산 상용제품 비중은 보안장비(83.1%)가 가장 높고, 소프트웨어(41.2%), 네트워크장비(14.6%), 하드웨어(9.6%) 순
-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장비의 국산 제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
- (소프트웨어) DBMS(3.2%) 제외한 상용SW(보안, 시스템관리SW 등)의 경우 국산제품이 공공시장의 54.8% 수준 점유
- (네트워크) 라우터(31.3%), 게이트웨이(10.5%), LAN 스위치(24.0%)의 경우 대부분 외산제품
- (하드웨어) PC급 서버를 제외한 중·대형 서버(4.3%) 및 주변기기(스토리지 : 11.0%, 백업장비 : 10.5%)등은 대부분 외산제품
- 기관별로 국산제품 도입 비중은 지방자치단체(41.2%), 중앙행정기관(35.5%), 공공기관(34.8%) 순
-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크고, 안정성 등을 중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산제품 도입 실적이 저조

<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국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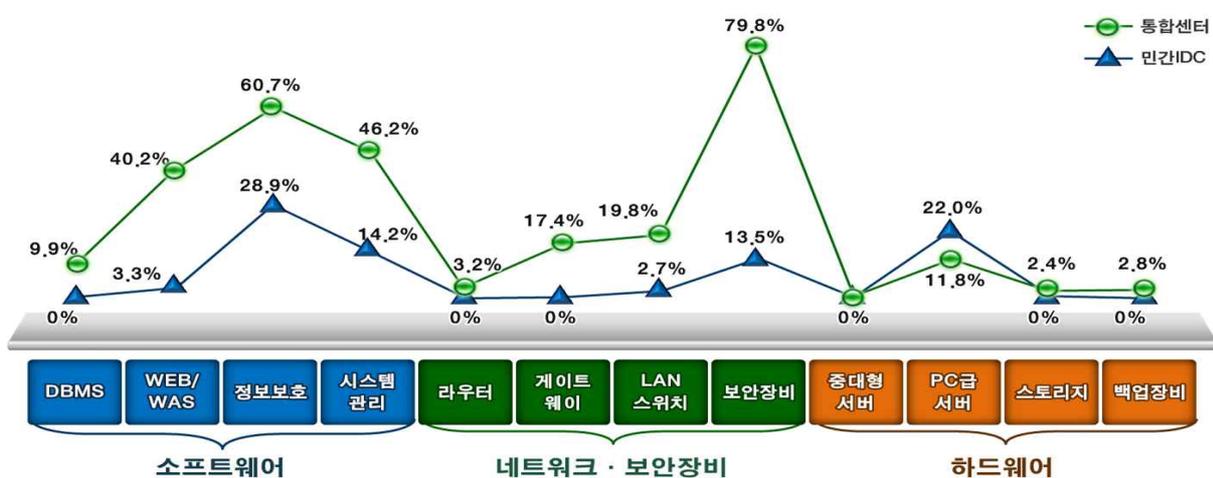
구 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총 국산비율
행정 기관	중앙행정기관	80.0%	44.7%	11.6%	5.6%	35.5%
	지방자치단체	92.6%	38.4%	23.0%	10.6%	41.2%
	계	86.3%	41.5%	17.3%	8.1%	38.3%
공공기관		76.6%	40.5%	9.3%	12.6%	34.8%
합 계		83.1%	41.2%	14.6%	9.6%	37.1%

※ 자료 : 법정부 EA시스템 정보자원 통계(2010.11, 수량기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민간IDC(Internet Data Center) 국산비율 비교

- ◆ 통합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IDC의 국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통합센터의 국산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소프트웨어) 통합센터의 국산비율은 39.2%로 민간IDC(11.6%) 보다 국산비율이 높은 수준
 - 민간IDC는 보안SW를 제외하면 국산제품이 전무한 실정
 - 통합센터는 보안SW, WEB/WAS 등의 국산비율이 50% 수준
 - ※ WEB(Web Server), WAS(Web Application Server)
- (네트워크) 통합센터의 국산비율은 13.5%로 민간IDC(0.9%)보다 국산비율이 높은 수준
 - 민간IDC의 경우 라우터, 스위치 등의 국산제품은 전무한 실정
- (보안장비) 통합센터의 국산비율은 79.8%로 민간IDC(13.5%)보다 국산비율이 높은 수준
- (하드웨어) 통합센터의 국산비율은 4.3%로 민간IDC(5.5%)보다 국산비율이 낮은 수준
 - 민간IDC는 PC급 서버의 국산비율이 통합센터에 비해 높은 수준

<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민간IDC 국산제품 비율 >



2. 발주제도 현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술위주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의 배점한도를 8:2로 규정('95년)
 - 발주기관은 사업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술과 가격의 배점한도 상·하향 조정 가능(7:3 ↔ 8:2 ↔ 9:1)

- (대기업 참여 하한제)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하한제 도입('04년)
 - 대기업의 참여 하한금액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10억→20억→40억)
 - ※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원, 8,000억원 미만 대기업 : 20억원('09.4)

- (SW분리발주) 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분리발주제도 도입('07년)
 - SW분리발주제도('09.6)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의 5천만원 이상 상용SW)
 - ※ 분리발주 적용률 : ('07) 12.9%→('08) 21.0%→('09) 32.6%→('10.10) 59.4%

- (하도급 사전승인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 및 우수전문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하도급 사전승인제 도입('07년)
 - 사업수행능력(50점) 및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50점)을 평가하여 **85점 이상일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

- (사업대가 기준) 정보화사업의 구축·운영·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제시('95년)
 - SW개발 및 재개발은 기능점수 방식,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은 컨설팅 지수, 데이터베이스구축은 투입인력 방식 등을 적용
 - 민간자율로 SW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대가기준 폐지 예정**('12.2월)

3. 문제점

□ 기술위주 평가체계 미흡으로 IT기업의 경쟁력 저하

- 국가정보화사업은 기술위주의 평가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술 對 가격=8: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기술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로 기술보다는 가격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사례 다수 발생
 - ※ 국가정보화사업 평균 낙찰률 : 86.6%('09년 기준)
 - ※ 기술 對 가격점수 역전비율 : 20억 이상 13.8%, 20억 이하 6.4%('09년도 조달발주)
- 조달발주시, 평가위원들의 업무이해도 미흡 등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도 IT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 공공부문에서 국산장비에 대한 역차별 현상 존재

- 정보시스템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고성능 제품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국산제품의 시장참여 제한
 - 발주기관이 상용제품(HW, SW)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IT업계에 의존함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특정규격이 제시되는 사례 다수 존재
- 상용제품(HW, SW) 제안서 평가시 기술보다는 브랜드 파워, 적용 사업 수 등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 국내 기업보다 글로벌 기업이 유리해지는 결과 초래
 - ※ 분야별 상용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 OS(MS, 78.4%), DBMS(오라클, 37.2%), 시스템관리 SW(IBM, 13.6%), 스토리지SW(EMC, 22.8%)
- 국내기업이 주로 경쟁하는 SW개발사업은 중소기업 가점이 있는 반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상용SW도입사업은 중소기업 가점 부재
 - ※ SW개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평가 가점 부여

□ 후진적 사업발주·관리로 수주기업의 경쟁력 내재화 곤란

-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불명확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과업변경으로 수주자의 비용부담 증가 초래
 - 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은 감사지적,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대가 미지급
 - ※ 과업변경 대가 지급률 : 중앙행정기관 4.4%, 지자체 15.3%(실태조사, 2010.10)
- 발주기관은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 공고를 남용함에 따라 발주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공고(40일)는 5%에 불과한 반면, 42.2%가 법정최소일인 10일 공고
-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장을 발주기관 또는 인근 사무실에 설치함에 따라
 - SW개발인력의 잦은 근무지 이동,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고급인력의 SW분야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 사업장 설치 현황(실태조사, 2010.10)
 - 발주자 사무실(54.6%), 발주자 인근사무실(12.5%), 사업자 개발센터(33%)

□ 대기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대처 미흡

- 현재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체결 후 하도급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주자의 형식적인 승인으로 실효성 미흡
- 국가정보화사업 입찰시 경쟁사보다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이 경쟁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 증가
 - ※ SW기술성평가기준은 “하도급업체의 보유기술,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가점 부여

III.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 추진전략 >

수발주제도 선진화 및 IT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전략	핵심 정책 과제
기술경쟁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①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 상향 조정 ② 사업책임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③ 평가위원 전문성 보완(조달입찰)
동반성장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① RFP 사전 규격공개 및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② BMT의무화 및 정보시스템 도입기준 마련 ③ 상용SW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관리혁신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① 제안요청서(RFP) 과업내용 명확화 ②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체계 확립 ③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강화 ④ 긴급발주 요건 강화 및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상생협력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① 하도급 지급비율 명시 의무화 ②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③ 하도급 인력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실천의지 제도개선 이행강화	①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발주제도 준수율 반영 ② 국가정보화 동반성장 지수 개발 ③ 문화운동 전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추진

- 저가수주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 비중 상향조정
 - 신기술 등을 선도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 상향조정(8:2→9:1)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과 상관없이 발표전문가에 의해 사업자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토록 사업책임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추진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PM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규정 마련

□ 조달평가지 평가위원의 전문성 보완

- 4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 도입
 - ※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할 경우, 경쟁업체에 기술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마련
 - ※ 「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및 「기술 평가위원 관리, 선정, 교섭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 Pool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관리
 - 조달청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평가시 사업 유형에 적합한 평가위원 Pool 제공
 - ※ 평가위원 Pool은 기존 학계 위주에서 벗어나서 공무원, 연구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2.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제안요청서(RFP) 사전 규격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 의무화 추진
 - 제안요청서(RFP) 작성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 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RFP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추진
 - 조달청 사례 등을 고려하여 5일 이상의 사전규격 공개기간 설정
 - ※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기간(일반 5일, 긴급 3일)
 - IT기업이 직접 발주자에게 이의 신청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민원창구로서의 「SW고충처리센터」 기능 강화
 - ※ 「SW고충처리센터」는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의신청을 발주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네트워크장비의 경우 사업 계획수립 최종단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RFP를 확정하도록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추진
 - 발주규격 심의는 우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전 기관으로 확산
 - ※ 발주규격 심의는 발주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안), RFP(안),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RFP를 최종 확정
- 정보시스템 규모에 적합한 HW 및 SW 도입기준 마련
 - 서비스 유형(대국민용, 행정업무용), 사용자 수, 보안수준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도입기준 제시로 불필요한 고사양 장비도입 자제 유도
 - 우선 HW 및 SW에 대한 도입기준 마련('11.3)·시행 후, 성과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장비 등으로 확산
 - ※ 실태조사(2010.10) 결과, HW 및 SW도입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행정 및 공공기관의 83.3% 차지

□ **비교분석(BMT : Benchmark Test) 의무화 추진**

- 상용제품(HW, NW, 상용SW)의 객관적인 품질 비교·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BMT의무화 추진**
- BMT에 따른 업계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SW분야 등으로 확대 추진**
 - ※ 공공기관의 BMT 실시 비율(실태조사, 2010.10)
 - 중앙행정기관 12%, 지자체 16%, 공공기관 9% 수준

□ **상용SW 등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관련 항목 별도 신설**

- 상용SW에 대한 기술평가지 SW개발사업에 준하는 **중소기업 가점 부여**
 - 중소기업 가점 부여시 상용SW 특성을 감안하여 **SW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대부분 상용SW는 중소 유통전문업체가 사업 신청)
 -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우선 구매, 판로지원 등 가능**
- **SW개발에 대한 기술평가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 인증 획득 기업(획득부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가점 부여**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추진**

-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상용SW에 대해서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 명문화 추진**
 - 유지보수 요율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11.6월)
 - ※ 유지보수 대가 지급 실태(실태조사, 2010.10)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6~10%, 상용SW는 7~15% 수준
- **정보보호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 정보보호SW제품의 경우 보안패치, 신규기능 업데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성격의 비용이 유지보수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

3.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 제안요청서(RFP)의 과업내용 명확화

- 제안요청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정의, 업무 분해도(WBS), 기능점수 등 정보전략계획(ISP) 필수 도출사항 규정
 - ※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정보시스템구축은 ISP 수립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ISP 정의 및 필수 도출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
- 발주기관이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지경부 RFP 명확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적 : 5개 사업('09년 3개, '10년 2개)

□ 긴급공고 발주 요건 강화 및 발주기간 현실화

- 긴급공고 요건은 재난, 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긴급변경 등으로 엄격히 제한
- 국가정보화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일반 공고기간(40일)을 사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 공고기간 : 40억원 이상 30일, 10억원 이상 25일, 10억원 미만 20일
 - 지방계약관련 법령도 상기 기준에 맞도록 공고기간 변경
 - ※ 지방계약법은 국가정보화사업 규모별로 공고기간 차등 적용
 - 10억 이상 : 40일, 10억 미만 : 20일, 1억 미만 : 10일

□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강화

- 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개정

- 기존 낙찰차액 활용대상인 감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 ※ 낙찰차액 활용 대상 : (기존) 보안, 감리→(변경) 보안, 과업변경 대가 지급

○ 감사부서 및 발주기관 등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문화운동 집중 전개

□ 인력관리의 유연성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우선 주사업자의 작업장에서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인력도 함께 근무

※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인력도 자사 작업장에 근무 검토

※ 국가정보화사업 작업장 설치장소(실태조사, 2010.10)

- 발주기관 사무실(54.6%), 임대사무실(12.5%), 개발센터(32.9%)

○ 사업단계별(요구사항 정의, 설계, 구현) 감리를 통해 과업완료
확인되면 관련인력의 타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업체인력관리의
유연성 부여

□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 체계 확립

○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시 기존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을 용이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및 표준
양식 제시

※ 프로그램 소스, DB속성, 정보시스템 구성도, 기능 정의서 등

○ 필수 산출물이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별부처의
EA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등록 의무화 추진

※ 현재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보화담당자의 PC, CD 등으로 관리

4.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 제안서에 하도급 지급비율 명시 의무화

- 현재 원도급 계약이후 하도급 계약 및 발주자의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도급 대가 인하 압력 등 원도급자의 불공정 사례 다수 존재
 - ※ 현재 사업수주 전에 하도급에 대한 단가는 대부분 계약 당사자간 구두로 협의
-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 의무화
 - 발주자는 하도급 지급비율이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하도급 승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 평가항목 신설

- 현재 하도급 승인시 평가하던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을 기술평가시 반영토록 하여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
 - ※ 현행 하도급 대금지급방식 적정성 평가는 대금지급 방식(현금/어음 등), 지급 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이 원도급과 일치한 경우 만점 부여
 - 항목별로 하도급 업체에 불리하게 지급할 경우 10점씩 차감하여 전체 85점 이상일 경우 합격

□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제약 등 불공정행위 근절 유도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여건 조성
 - SW 대·중소상생협력위원회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운동 전개 등을 통해 의식변화 유도
 - ※ 제도적인 규제보다 대기업 등의 자발적 문화운동을 통한 개선이 보다 효과적

5. 제도개선 이행 강화

□ 수발주제도 준수여부를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 현행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보화 부문」에 수발주제도 준수여부 반영
 - 과업변경시 적정대가지급, 긴급공고 요건준수, RFP 사전규격공개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수발주제도 준수항목 반영 검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 개발

- 수발주 제도 이행여부 등 IT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 개발 측정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표 :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도입율 등

□ 수발주제도 선도 적용 및 문화운동 전개

- 수발주자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 전개
 - 공공기관 발주자 협의회, IT관련 협회 등과 공동으로 매년 발주관행 개선 캠페인 전개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수발주제도를 선도 적용한 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용사례 등 교육 강화('11년)
 - ※ 제·개정되는 정보화사업관련 법제도 및 시범적용 사례 등을 교육

□ 국가정보화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발주제도 개선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범정부 EA시스템 등에 관련 통계 추가
 - 범정부 EA시스템 : 유지보수율, 국산시스템 비중, 필수 산출물 등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 기술 對 가격 비중, 공고기간, BMT 여부 등

핵심과제별 법령 개정 사항

핵심과제	법제도	소관 기관
기술 對 가격 배점 상향 조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사업책임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제안서 사전 검토제 도입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조달청 조달청
평가위원회 Pool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행안부 조달청 조달청
제안요청서 사전규격 공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행안부 조달청
발주규격 심의 의무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HW 및 SW 도입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벤치마크테스트(BMT) 의무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경부
상용SW 등 중소기업 평가항목 신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경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경부
제안요청서(RFP) 과업내용 명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 체계 확립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강화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	기재부
긴급공고 발주요건 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행안부
인력관리의 유연성 및 근무환경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제안서 하도급 지급비율 명시 의무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경부
행정·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안부 기재부

VI. 향후 추진계획

세부 핵심과제		추진시기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기술 對 가격배점 기준 상향 조정	2011. 6월
	사업책임자 제안서 발표 의무화	2011. 6월
	제안서 사전검토제 도입	2011.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 평가위원 Pool 구성	2011. 3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제안요청서 사전규격 공개	2011. 6월
	발주규격 심의 의무화	2011.10월
	HW 및 SW 도입기준 마련	2012.12월
	벤치마크테스트 의무화 추진	2011. 6월
	상용SW 등 중소기업 평가항목 신설	2011. 6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2011.12월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명확화	2011.12월
	긴급공고 발주요건 및 발주기간 현실화	2011.12월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강화	2011.12월
	인력관리의 유연성 및 근무환경 개선	2011. 6월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 체계 확립	2011. 6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제안서에 하도급 지급비율 명시 의무화	2011. 6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 평가항목 신설	2011. 6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운동 전개	2011. 2월
제도개선 이행 강화	공공기관 수발주제도 준수율 경영평가 반영	2011.12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 개발	2011. 5월
	수발주 문화의 선진화 운동 전개	2011. 2월
	국가정보화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1. 6월